

소방청 일반직공무원(전산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산주사보	1명	'24년 11월(예정)	소방청 정보통신과(세종)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정보보안	전산주사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업무 계획·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정보보호 장비 및 솔루션 구축·운영○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1.5.)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1.5.) 기준]

- 전산주사보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정보보안	응시 자격 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공무원경력)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공무원경력)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근무 경력 3년 이상(민간경력)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p>[관련경력] 정보보안 관련 경력</p> <p>[관련학위] 정보보안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기타 관련 학과</p>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함
 -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예) 경력1√, 경력2, 경력3 / 학위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②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11.5.) 기준**으로 판단함
 - ※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분야 경력기간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 불가
- ③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④ 경력, 학위,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경력의 범위

- ①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②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③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④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⑤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⑥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⑦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4.10.17.) 기준]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관련분야 경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우대요건의 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며 근무기간별(월) 차등 우대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직무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번호는 '24. 10. 28.(월)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구분	시험일정	장소/방법
시험공고	'24. 10. 7.(월)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24. 10. 14.(월) ~ 10. 17.(목)	119고시(119gosi.kr)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4. 10. 30.(수)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면접시험	'24. 11. 5.(화)	소방청
최종합격자 발표	'24. 11. 13.(수)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4. 10. 14.(월) 10:00 ~ 10. 17.(목) 18:00
※ 문의전화: 044-205-7292(채용절차), 044-205-7286(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내용
1.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4매 이내로 작성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및 서명
4. (경력) 자격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상근여부(상근·비상근·전일제·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포함하여 표기), <u>채용 관련분야와 연관성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상세 기재</u> ○ 발급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용도는 기관 제출용으로 기재(대표자 또는 회사 직인 포함)) ※ 단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제외
5. (경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6. (경력)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7. (경력)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8p 참고)
8. (학위) 석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기타 학과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

우 대 요 건	9.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관련분야 경력 ※ 우대요건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경력증명서”에 준하여 담당업무 등 상세 기재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1. 소득금액증명원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1. 14. ~ 12. 13.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

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92)

2) 직무 관련 사항: 소방청 정보통신과(044-205-7273)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보보안	전산주사보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세종)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업무 계획·예산 수립 및 집행 등 ○ 정보보호 장비 및 솔루션 구축·운영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논리적사고, 전문성 등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정책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지식 ○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지식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지식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관련분야: 정보보안(개인정보 제외)

응시자격요건	경력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공무원경력)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공무원경력)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근무 경력 3년 이상(민간경력)
		[관련경력] 정보보안 관련 경력 [관련학위] 정보보안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기타 관련 학과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정보보안 관련분야 경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p>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응시직급	전산 7급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전산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 - _____

입증인(2)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 - _____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정보보안	전산 7급
<p>학위개요</p>	<p><input type="radio"/> 논문제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글명: <input type="checkbox"/> 영문명: <p><input type="radio"/> 심사 연월일:</p> <p><input type="radio"/>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p> <p style="padding-left: 20px;">※ 취득대학/대학원명은 전형위원회에게는 비공개 처리</p> <p><input type="radio"/> 지도교수:</p>	
주요 내용 요약		
<p>I. 연구목적</p> <p>1.</p> <p style="padding-left: 2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1)</p> <p style="padding-left: 20px;">가)</p> <p style="padding-left: 40px;">(1)</p> <p style="padding-left: 20px;">(가)</p> <p>II. 연구내용</p> <p>III. 연구 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p>		
<p>본 논문요약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 .</p>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자: (인)</p>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 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학력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동 학과는 ‘소방청 일반직공무원(전산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2024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소방청장 귀하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